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47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김영진 · 이해식 · 신정훈
차지호 · 김준혁 · 이재정
윤종균 · 허 영 · 윤건영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및 유효성 검증, 모바일신분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등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정보주체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민이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용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갖추고, 확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정보, 후견등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려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등록하도록 함. 또한, 정보주체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자신의 연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다.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여부 및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지원기관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검증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추고,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과 연계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비스 제공자가 연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를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법령에 따라 나이, 본인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검증 사실을 보관·관리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라. 서비스 제공자의 모바일신분증 검증을 지원하는 검증지원기관과 국민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지원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4).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바일신분증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제도 개선,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 및 민관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모바일신분증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검증지원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지정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보고, 업무정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 전

담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사.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모바일신분증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조의7).

아. 이용지원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모바일신분증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모바일신분증과 혼동하게 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배포·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8).

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차.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모바일신분증 검증지원기관 또는 이용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한 명칭의 모바일신분증 앱의 개발·배포·운영, 시정조치 불응자,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 및 제78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제10조의2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39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3항 중 “운영기반”을 “운영기반(이하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운영기반”을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으로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정보주체는 모바일신분증 발급, 이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제공·이용·대조·연계·저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모바일신분증 검증) 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자(이하 “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여부 및 유효성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검증지원기관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해 모바일신분증 검증을 위한 설비 또는 기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계한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계를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계를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연계한 기관이 스스로 연계해지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기능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시정조치를 받은 후 조치 요청 기간 내에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0조의6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나이,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검증 사실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 사실의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자 연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검증지원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검증을 지원하는 자(이하 “검증지원기관”이라 한다)

2. 정보주체가 모바일 앱을 통해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을 개발·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이용지원기관”이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지원기관 또는 이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시정조치를 받은 후 조치 요청 기간 내에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6. 제10조의6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지원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지정절차, 지정기준, 업무의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모바일신분증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바일신분증 관련 정책·계획의 수립·총괄
2. 모바일신분증 제도 개선
3. 모바일신분증 관련 각 행정기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4. 모바일신분증 관련 민관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지원
2. 검증지원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지정 관련 평가 기준 마련
3.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운영 관련 수수료 정책 및 기준 수립
4.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등 모바일신분증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4제1항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및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2.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 전년도 평가실적 보고서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및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또는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정조치를 받은 후 조치 요청 기간 내에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10조의6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및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운영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모바일신분증 이용자는 해당 기관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누구든지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지원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상호, 명칭, 서비스 등에 모바일신분증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된 모바일신분증과 혼동하게 하는 모바일 앱 등을 개발·배포·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9(적용 범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에 대해서는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2139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1호의5를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검증지원기관 또는 이용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제10조의8을 위반하여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지원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상호, 명칭, 서비스 등에 모바일신분증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과 혼동하게 하는 모바일 앱 등을 개발·배포·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또는 제10조의5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자
2.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 ----- ----- -----제10조의2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 ----- -----.
법률 제21394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② (생략)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u>운영기반</u>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 ----- ----- -- <u>운영기반(이하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한다)</u> -----

<신 설>

-----.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정보주체는 모바일신분증 발급, 이용, 관리 등을 위해 필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
증의 발급·이용·폐기, 안전
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
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요한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
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자가 제
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제공·
이용·대조·연계·저장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
다.

⑦ -----제6항-----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

제10조의3(모바일신분증 검증)

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
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
바일신분증을 활용하여 이용자
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자(이하
“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여부 및 유효성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제10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증지원기
관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검
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해 모바일신분
증 검증을 위한 설비 또는 기
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모
바일신분증 공통기반과 연계하
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계한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연계를 해지하
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연계를 해지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계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연계한 기관
이 스스로 연계해지를 요청
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설비 또는 기능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시정조치를 받은 후 조치 요청 기간 내에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0조의6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나이,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검증 사실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 사실의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자 연
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검증지원기관 및 이용
지원기관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을 받아야 한다.

1.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
비스 제공자의 검증을 지원
하는 자(이하 “검증지원기관”
이라 한다)

2. 정보주체가 모바일 앱을 통
해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을 발급,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앱 등을 개발·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이
용지원기관”이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지원기관 또
는 이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시정조치를 받은 후 조치 요청 기간 내에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10조의6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지원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지정절차, 지정기준, 업무의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신 설>

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모바일신분증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바일신분증 관련 정책 · 계획의 수립 · 총괄

2. 모바일신분증 제도 개선

3. 모바일신분증 관련 각 행정기관의 업무 협의 및 조정

4. 모바일신분증 관련 민관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지원

2. 검증지원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지정 관련 평가 기준 마련

3.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운영
관련 수수료 정책 및 기준
수립

4.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등
모바일신분증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
4제1항의 지정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 업무
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모바
일신분증 평가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
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및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해
당 연도의 업무계획 및 전년

도 추진실적

2.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 전
년도 평가실적 보고서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
분증 전담기관 및 모바일신분
증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또
는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하거
나 폐업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시정조치를 받은 후 조치
요청 기간 내에 시정조치 사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
우

<신 설>

6. 제10조의6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7.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및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운영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 모바일신분증 전담기관,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 모바일신분증 전담기

<신 설>

관, 모바일신분증 평가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
원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
를 입은 모바일신분증 이용자
는 해당 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
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
지원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
임을 면할 수 없다.

<신 설>

제10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누구든지 제10조의4제1항제2호
에 따른 이용지원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상호, 명칭, 서비스
등에 모바일신분증 또는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된 모
바일신분증과 혼동하게 하는
모바일 앱 등을 개발·배포·

<u><신 설></u> 법률 제21394호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법률 제76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4. (생략) <u><신 설></u> <u>1의5.</u> (생략) 2. ~ 5. (생략) ④ ~ ⑥ (생략)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u>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u> <u>제10조의9(적용 범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는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7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1의4. (현행과 같음) <u>1의5.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검증지원기관 또는 이용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u> <u>1의6. (현행 제1호의5와 같음)</u>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과태료) ① ----- -----
---	--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 2. (생 략)

<신 설>

-----.

1. 제10조의8을 위반하여 제1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지원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상호, 명칭, 서비스 등에 모바일신분증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된 모바일신분증과 혼동하게 하는 모바일 앱 등을 개발·배포·운영한 자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3제4항, 제10조의4제2항 또는 제10조의5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자

2.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 <u>제1항</u>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거짓으로 제출한 자</u> ③ <u>제1항</u> 및 <u>제2항</u>----- ----- --.
--	--